



1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



2 희망보직제, 희망근무제, 병가 및 유연근무



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가이드

○ 장애인 고용의무제도

▶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법정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.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제2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.

1.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: 1천분의 34
2.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: 1천분의 36
3. **2024년 이후 : 1천분의 38**

○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

▶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현황(고용노동부 통계, 2022)

구분	기관수	적용대상 공무원*	장애인(중증, %)	고용률
중앙행정기관	53개	202,342명	6,209명 (1,193명, 19.2%)	3.66%

*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공안직군 공무원, 검사, 경찰·소방 경호 공무원 및 군인은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

▶ 장애인 공무원 장애유형별 현황(고용노동부 통계, 2022)

(단위 : 명)

계	지체	뇌	시각	청각	정신적	언어	안면	신장	심장	간	호흡기	장루요루	노년성	상이
6,209	3,203	336	893	312	92	54	17	256	22	43	10	20	10	941
100%	51.6%	5.4%	14.4%	5.0%	1.5%	0.8%	0.3%	4.1%	0.4%	0.7%	0.2%	0.3%	0.2%	15.1%

* 정신적 장애인: 지적, 자폐성, 정신 장애인 포함



○ 장애인 공무원 희망보직제

▶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,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미반영 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• 「통합인사지침」 - III.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- 2. 임용 - 마. 보직관리

○ 장애인 공무원 희망근무제

▶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, 정기적 치료기관,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근무제 실시하며,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·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• 「통합인사지침」 - III.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- 4. 근무환경

○ 병가 및 유연근무

병가

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,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유연근무

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, 재활·치료 등 목적으로 시차 출퇴근, 근무시간 선택,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
- **시차 출퇴근**: 1일 8시간 근무, 출퇴근시간 자율 조정
- **근무시간 선택**: 주 5일(40시간) 근무하면서, 1일 근무시간 조정(4~12시간)
- **재택 근무**: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, 08:00~10:00 내 출근시각 조정



3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사업



○ 보조공학기기 지원

▶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,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 경증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

[제출서류]

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, 장애인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(앞뒷면,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, 공무원증 사본

지원 한도 장애인 1인당 1,500만원(중증 2,000만원) 한도

※ 지급보충보험증권 가입 필수(2년 근로 유지 조건 미이행시 잔존가액 환수)

※ 본인부담금 발생하며, 기기 가액 130만원 이하는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%, 기기 가액 130만원 초과시 130만원의 10% + [(보조공학기기 가격-130만원) × 5%]

○ 근로지원인 지원

▶ 장애인 공무원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증장애인 공무원이 소속기관 장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

[제출서류]

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(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, 장애인 증명서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(앞뒷면, 장애인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

지원 한도 법정근로시간 내(1일 8시간, 주 40시간 이내)

※ 이용시 1시간당 개인부담금 300원 부과

○ 신청방법

• 전자신청 | <https://hub.kead.or.kr>[장애인서비스신청모털]

• 수기신청 | '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' 신청 양식 작성 후 우편, 팩스,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관할 지사(1588-1519)에 신청

4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& 고충처리제도



○ 공무원 마음건강센터

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도와드립니다. 무료 운영되며 개인정보보호와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합니다.

• **이용대상** : 공무원 및 그 가족, 순직공무원의 유족

• **이용시간** : 평일 10:00~19:00 (월·수·금 10:00~20:00/ 마지막주 토 10:00~15:00)

• **상담방식** : 대면 및 비대면(전화, 이메일, 화상 등) 상담

• **상담분야** : 직무 스트레스, 직장 내 갈등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, 개인 심리 기질 및 가족관계 갈등 등

• **운영현황** : 전국 9개 센터(세종·서울·과천·인천·춘천·대전·대구·광주·제주)

○ 공무원 고충처리제도

건강하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'공무원 고충처리제도'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고충처리 대상

- ① 보수·근무환경 등 근무조건에 관련된 사항
- ② 승진·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련된 사항
- ③ 성문제·직장내 괴롭힘 등 상·하급자나 동료,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사항
- ④ 기타 개인의 정신적·심리적·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등

심사 청구

- 6급 이하 공무원(연구사·지도사, 경감, 소방경 이하) → 소속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
- 5급 이상 공무원(연구관·지도관, 경정, 소방령 이상) →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

※ 성폭력 범죄·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(갑질) 등에 관한 고충 등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바로 청구 가능



함께 하는 길,
평등으로 향하는 길



| 고충처리 제도 문의 및 고충상담 |

☎ 044-201-8604, 8654, 8658, 8668